

자연과학의 발전과 산업재산권

강석주[†] · 신진균^{*}
강석주특허 법률사무소
^{*}특허청

Development of Natural Science and Industrial Property

Seok-Ju Kang, Jin-Keun Shin^{*}
K. S. J. Patent & Law Firm
^{*}Korea Industrial Patent Office

1. 서론

우리나라는 이제 GNP \$10,000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 GNP \$10,000 시대는 경제성장의 분기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경제성장의 분기점인 GNP \$10,000 시대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결정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자원의 빈약이라고 하는 악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선진 외국기술에 의한 많은 제품 및 비록 기술수준은 낮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제조 원가가 상대적으로싼 물품이 물밀듯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조건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모든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저마다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알아 두어야 할 것이 특허제도인 것이다.

특허제도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특허제도”라고 하는 용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특허제도를 올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이 해설에서는 “특허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특허제도”的 이용에 보탬이 되도록 그 동안의 경험과 법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려는 것이다.

2. 산업재산권 제도란?

산업재산권 제도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허제도”的 다른 표현으로, 특허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를 말하는 것인데, 특허청에서는 산업재산권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이 있고, 또 그를 운용하기 위한 하위 법령 및 각종 기준이 있다.

상기의 4개 법률에 의하여 운용되는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 이미 깊숙히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산권제도와 직접적인 관련된 갖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 제도가 각자에게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미처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 즉, 특수한 사람들과 관련을 가질 뿐이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필자가 보는 견해로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산업재산권 제도의 일부를 잘 이용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제도를 등한시하는 바람에 애써 키운 사업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일부 산업재산권 제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산을 당진하기도 한다. 즉,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함으로써 많은 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잘못 이해하고 막연한 사고(思考)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자신에게 큰 피해를 안겨 주는 경우도 있다.

3. 산업재산권 4법의 비교

3.1. 정의

-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매우 고도한 것.
- * 실용신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 의장 :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미감을 갖는 것.
- * 상표 :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되어 식별력을 갖는 것.

3.2. 보호 대상

- * 특허 : 모든 물건(화합물, 조성물 포함) 및 방법(제조, 사용방법 등).
- * 실용신안 : 물품의 구조, 형상 및 그 조합(기능상의 특징을 요함).
- * 의장 :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물품.
- * 상표 :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과 이들과 색채가 결합되어 식별력을 갖는 표지.

3.3. 보호 기간

- * 특허 : 출원일로부터 20년(1996. 7. 1. 자 출원부터 적용).
-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15년(1996. 7. 1. 자 출원부터 적용).
- * 의장 : 등록일로부터 10년.
- * 상표 : 등록일 또는 갱신등록일로부터 10년.

3.4. 출원서류

- * 특허 : 출원서, 명세서, 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함) 및 요약서.
- * 실용신안 : 출원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 * 의장 : 출원서 및 정부상도법에 의한 사시도 및 6면도(필요한 경우 사용상태도 등의 참고도).
- * 상표 : 출원서 및 상표전본.

4.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4.1. 정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는 권리의 보호 대상이 각기 다르고, 또 출원의 절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은 기능적인 면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명”과 “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다만, 발명의 경우에는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실용신안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이들의 조합”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발명에서는 “모든 물건(화합물, 조성물 포함) 및 방법”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기의 정의를 토대로 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4.1.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과 고안은 다 같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즉, 자연법칙 그 자체 또는 자연법칙이 아닌 법칙을 이용한 것은 발명 또는 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자연법칙 자체 : 에너지불변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원리 등.

비자연법칙 이용 : 컴퓨터 프로그램, 암산법, 광고방법 등

4.1.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연법칙에 의한 구체적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연법칙이 아닌 법칙을 이용한 것과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예) 비자연법칙을 이용한 경우 : 경제이론을 이용

한 통화 진축방법 등.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경우 : 영구동력, 무원동력 등.

4.1.3.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인위적으로 자연법칙에 의한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 어진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즉, 이미 알려진 물건인 경우에는 그 발명 또는 고안에서 도입된 새로운 기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입된 기술에 의하여 종전의 물건 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효과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4.2.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고안)

4.2.1. 특허

원자핵변환에 의한 물질의 발명(1996. 7. 1. 본조 폐기).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발명.

4.2.2. 실용신안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고안.

4.3. 특허(등록) 요건

4.3.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함

특허법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산업은 종래의 공업의 개념을 뛰어 넘는 것으로 농업, 임업은 물론이고 운수업, 유통업 등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산업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일과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실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발명(고안) 그 자체로서 거래 등 유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다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되는 것은 산업상 이용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4.3.2. 신규성

신규성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허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는 발명의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내외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기재 된 발명(고안)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4.3.3.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신규성이 있다고 하여도 공지(실시 및 문헌상의 공지 포함)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부터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공지된 발명(고안)과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을 비교적 상세히 대비하여, 발명의 목적, 발명의 구성, 발명의 효과가 이미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때로는 실시예, 실험예 등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4.3.4. 선원성

우리 나라의 특허제도는 선원주의(특허법 제36조)를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원주의란, 동일 성의 범주내에 있는 발명(고안)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일 먼저 출원된 발명(고안)만이 특허(등록)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동일의 발명이 동일자로 출원된 경우에는 심사관의 지시에 의하여 양 발명의 출원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어느 한 출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포기(또는 취하)하여야 한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자의 동일 발명은 모두 거절이 된다.

그러나 동일성을 갖는 발명이 동일의 출원인에 의하여 서로 다른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자신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되지는 아니한다(특허법 제29조 제3항, 제4항).

4.4. 출원서 및 명세서

4.4.1. 출원서의 기재사항(특허법 제42조 제1항)

-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출원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출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출원서의 제출 연월일

- * 발명의 명칭

-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신규성 의제를 주장하는 경우 관련 내용

4.4.2. 출원서의 첨부물(특허법 제42조 제2항)

- *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의 범위가 기재된 명세서

- * 도면은 발명의 기능을 잘 표현하고 있는 기능도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면

*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 발명(고안)이 해결하려고 하는 기술적 과제, 발명(고안)의 해결방법의 요지 및 발명(고안)의 용도가 잘 나타나 있는 요약서

* 대리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 위임장

4.4.3. 명세서(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는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관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대하여 “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②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③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4.3.1. 발명의 상세한 설명

명세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만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또는 등록)가 된 경우 그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한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모두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이고, 진보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세한 설명에서 그 발명의 성립성, 산업상 이용성, 반복 생산성,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의 기능 및 각 기능간의 작용, 구성된 발명으로부터 유발되는 효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 거절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작성되어야만 한다. 즉, 발명 자체가 개량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에 관한 모든 관련 사항을 골고루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발명 자체가 개량발명인 경우에는 발명 전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개량부분을 종래의 기술과 비교하면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개량부분에 의한 효과를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증을 하여야 한다.

4.4.3.2. 특허(등록)청구의 범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를 해석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명세서에 있어서 발명의 에센스에 해당된다. 즉, 명세서의 여타 조건들이 완벽하게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특허청구의 범위가 잘못 작성되면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심사는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적 보호범위가 발명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되어 실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기술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며, 또 당해 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공지된 다른 발명의 기술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져야 한다.

또한, 특허청구의 범위는 그 출원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즉, 발명의 기술적 보호범위를 기재함에 있어서 발명을 구성하는 사항을 단순한 나열 형식으로 기재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는 그 발명이 어떠한 것인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서는 안 되며, 발명을 표현함에 있어서 기능, 작용, 효과 또는 불필요한 수식어 등을 함께 기재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어떠한 구성을 갖는 것인지 불명료하게 표현되어서도 안 되는 것으로, 발명의 표현은 각 구성요소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4.4. 특허청구 범위의 다항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요건에 의해 기재된 특허청구의 범위는 다수의 항으로 기재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다수 개의 항을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이다.

이와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다항제는 발명을 보호함에 있어서 다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호하지 아니하고는 발명자가 많은 노력과 재원을 들여 연구하고 완성한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명자가 연구하고 완성한 발명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하여 다수의 출원으로 나누어 출원을 한다면 이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한 심사관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는 발명들을 따로따로

내용파악을 하여야 하고 개개별로 자료조사 등을 하여야 하므로 보다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가져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이와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다행제에 관해서 다음의 특허법 제42조 제5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기재요건은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다.

4.4.4. 1. 특허법 제42조 제5항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4. 2.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① 법 제4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독립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데,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종속항은 그 종속항이 속하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 이상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다.

⑦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상기의 관련 법조문의 내용은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 및 그 기재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42조 제5항에서는 그 기재형식을 대통령령(특허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그 기재형식

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령 제1항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뉘어 기재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종속항에 대하여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이라는 정의를 두고 있으며 독립항은 상기 종속항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항은 독립항의 기재 숫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발명의 성질에 따라”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카테고리별로”라고 해석하면 적당할 것이다. 즉, 방법과 장치를 하나의 청구항으로 기재하거나, 구성을 달리하는 내용을 하나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다.

제3항은 종속항의 기재 숫자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사항을 하나의 종속항으로 묶어서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4항은,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해야지 “앞의 항”, “선행되는 항” 등의 모호한 인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5항은 다수의 항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예를 들면 제1항 또는 제2항,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 등의 형식으로 인용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 제1항 내지 제5항 등으로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제6항은 종속항이 다수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되는 항이 다수의 항을 인용한 항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다수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다수의 항을 인용한 다른 항을 인용하게 되면 항마다 발명으로 보는 우리나라의 특허법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중복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사관 또는 이해 관계인이 그 청구항에 대한 발명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7항은 종속항이 인용하는 다른 청구항보다 앞에 기재되는 경우에는 뒤에 기재된 인용된 다른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의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므로 심사관 또는 이해 관계인이 그 청구항에 대한 발명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되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제8항은 다수의 청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아래비아 숫자 이외의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발명 내용의 일부로 잘못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규정이다.

4.4.4.3. 특허법 제45조

① 특허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특허법 제45조는 다수의 발명이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한다면 하나의 출원에 다수의 독립 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종전의 단항제하에서는 하나의 항만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2 이상의 발명은 그 발명의 숫자만큼의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은 동일한 내용을 그 출원마다 기재하여야 하므로 출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출원을 함에 있어 과다한 출원비용 및 출원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하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다수의 출원을 일일히 내용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명이 유사한 경우 동일 발명으로 취급되어 어느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발명을 한 발명가의 발명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허제도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발명하고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는 댓가로서 독점권과 배타권을 발명자(출원인)에게 보호하는 제도이니만큼 특허권자의 보호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단항제하에서는 완벽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마련된 것이 단항제에 의한 보호인 것으로, 즉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발명(단일성이 있는 발명)이라면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발명자가 특허출원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경감하여 주고, 심사관의 심사편의도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4.4.4.4. 특허법 시행령 제6조(1특허출원의 요건)

①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특허출원의 요

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 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
 -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
 -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독립항

3.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1독립항만으로 포괄하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 이상의 독립 항을 기재할 수 있다.

상기의 1특허출원의 요건에 관한 대통령령은 그 문구만을 읽어 보아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실문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의 내용으로부터 해석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발명의 카테고리를 크게 나누어서 물건과 방법이라는 2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고, 물건이라는 카테고리내에는 일정한 형상을 갖는 물건 뿐만 아니라 화합물, 조성물과 같은 물질, 장치, 기계, 기구, 미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물건에 대한 발명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물건 및 방법은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그 구성 및 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유기적인 관계라 함은 발명을 한 특정의 물건을 제조·사용·취급·이용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4.5. 출원의 종류에 따른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4.4.5.1. 신규의 화합물을 발명한 경우

-화합물의 사용분야(예 : 농약, 의약, 식품첨가물 등)

-발명한 신규 화합물과 관련된 종래의 화합물

- 출원하고자 하는 신규 화합물의 구조식 등 화합물 자체에 관한 사항
- 출원하고자 하는 신규 화합물의 제조방법
- 신규 화합물의 사용에 관한 설명
- 신규 화합물의 제조에 관한 실시예
- 제조된 신규 화합물의 입증에 관한 데이터
- 신규 화합물의 적용을 입증하는 실험예(의약의 경우 동물실험예)
- 종래의 사용되던 화합물의 비교용 실시예
- 신규의 화합물이 종전의 화합물로부터 증진된 효과를 나타내는 설명

4.4.5.2. 제조(분석, 사용 등) 방법에 관한 발명인 경우

- 출원하고자 하는 방법의 발명이 사용되는 산업분야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방법 및 종전 방법에서의 문제점
- 종전에 사용하던 방법에 관한 문헌
-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상세한 방법
- 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의 자연과학적 이론
- 출원하고자 하는 방법에 특별히 사용되는 장치 등의 설명 및 도면
- 필요한 경우, 출원하고자 하는 방법에 대한 실시예 및 결과
- 출원하고자 하는 방법의 발명이 가져다 주는 효과

4.4.5.3. 장치에 관한 발명인 경우

- 출원하고자 하는 장치의 사용분야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장치에 관한 설명 및 문헌
- 출원하고자 하는 장치의 설명 및 도면(기능을 나타내는 도면)
- 출원하고자 하는 장치의 운전방법에 관한 설명
- 출원하고자 하는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4.4.5.4. 단위 물품에 관한 발명인 경우

- 출원하고자 하는 단위 물품의 사용 용도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대용 물품의 설명 및 도면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대용 물품에 관한 문헌 및 문제점
- 출원하고자 하는 단위 물품에 대한 설명 및 기능 등에 관한 도면

- 출원하고자 하는 단위 물품의 제조방법(필요한 경우 제조장치)의 설명
- 출원하고자 하는 단위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4.4.5.5. 조성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

- 출원하고자 하는 조성물의 사용분야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조성물에 관한 문헌 및 설명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조성물에서 유발되는 문제점
- 조성물을 구성하는 단위 물질의 명칭 및 조성비율
- 단위 물질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 및 조성비로 이루어지는 이유
- 출원하고자 하는 조성물의 적용 실시예 및 그 결과
- 동일 분야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조성물의 비교 실시예 및 그 결과
- 출원하고자 하는 조성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

4.5. 특허(실용신안)권의 침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 제126조),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127조), 손해액의 배상을 위한 배상액의 추정(법 제128조), 생산방법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추정하기 위한 생산방법의 추정(법 제129조), 과실의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과실의 추정(법 제130조), 특허권자의 신용 등이 실추된 경우 그 신용회복을 위한 특허권자의 신용회복(법 제131조) 및 손해액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서류 제출의 명령(법 제132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별칙규정 및 남용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침해죄(법 제225조), 위증죄(법 제226조), 허위표시의 죄(법 제227조) 및 사위행위의 죄(법 제22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용신안의 경우는 상기의 법을 원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다.

4.6. 특허출원의 예

4.6.1. 공고번호 : 제96-5613호

명칭: 대나무를 이용한 건강식의 제조방법

발명의 목적 : 종양, 해열, 살충, 구토, 팍란, 거담, 당뇨, 고혈압, 신경쇠약, 임신빈혈, 소아전염질환, 간질, 불면증, 안구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나무를 이용하여 대나무의 수액이 함유된 밥을 제조하여 제공코자 함.

발명의 구성 : 적당한 크기의 대나무를 1마디씩 절단하고, 그 내부에 있는 속껍질(竹茹)를 제거한 다음, 쌀과 함께 밤, 인삼, 은행,잣 등을 혼합하여 대나무에 충진하고 압력솥 등에서 수증기로 가열처리함.

발명의 효과 : 대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그 내부에 충진된 쌀 등에 스며들고 또 대나무의 향이 밥에 스며들어 인체에 유익하여 향이 우수한 밥을 제조할 수 있음.

4.6.2. 공고번호 제96-5362호

발명의 명칭 : 점도의 자동 측정장치

발명의 목적 : ① 여러 액체의 점도를 동시에 측정

- ② 자동 주입 및 자동 배출을 제어하는 벨브시스템을 구비한 장치의 제공
- ③ 다수의 점도계 튜브를 동시에 세척 할 수 있는 수단을 갖는 점도계의 제공
- ④ 다양한 크기의 튜브를 사용할 수 있는 점도계의 제공
- ⑤ 저렴한 비용의 점도계의 제공

발명의 구성 : 액체의 점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항온조내에 장착된 다수의 점도계 튜브와 상기 각각의 튜브는 주입 튜브와 상기 주입 튜브의 바닥부에 접속되며, 일련의 이격되게 서로 연결된 상측, 중간 및 하측 벨브와 상기 중간 및 하측 벨브 사이에 제공된 모세관을 갖는 측정 튜브와 상기 측정 튜브의 상기 하측 벨브로부터 상방으로 연장된 가지 튜브를 포함하며, 상기 주입 튜브 및 가지 튜브는 대체로 서로 평행하게 대치되어 있으며 상기 측정 튜브는 상기 중간 벨브의 위·아래에 각기 배치된 상측 및 중간 표시부와 상기 하측 벨브에 또는 그 아래에 배치된 하측 표시부를 가지며; 상기 각각의 주입 튜브에 공급 라인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고 시료액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다수의 용기와; 상기 각각의 용기내에 수용된 시료액을 상기 각각의 측정 튜브내에 주입하는 수단과; 상기 시료액을 상기 각각의 측정 튜브내에서 상·하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수단과; 상기 주입수단 및 상기 이동수단

을 제어하는 벨브시스템을 포함하고 상기 제어밸브시스템은 각기 4개의 솔레노이드 벨브로 구성된 다수의 솔레노이드 벨브 유니트를 구비하며, 상기 각각의 제1 솔레노이드 벨브는 제1공압 라인에 접속되어 상기 각각의 시료액 수용용기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각각의 제2솔레노이드 벨브는 상기 각각의 가지 튜브에 접속되어 있고, 상기 각각의 제3솔레노이드 벨브는 제1이제터를 갖는 제3공압 라인에 접속되고 개개의 버퍼용기를 통하여 상기 각각의 측정 튜브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각각의 제4솔레노이드 벨브는 제2공압 라인에 접속되어 있으며 상기 각각의 제4솔레노이드 벨브는 제2공압 라인과 각각의 폐액용기에 접속된 제2이제터를 갖는 라인에 각기 접속되며; 상기 제어 벨브시스템을 구동하는 수단과; 상기 시료액의 매니스커스를 상기 측정 튜브상의 상기 각각의 표시부에서 감지하여 감지신호를 출력하는 수단과; 상기 감지신호에 응답하여 상기 벨브시스템을 작동하는 상기 구동수단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과; 상기 감지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시료액이 상기 측정 튜브상의 상기 상측 및 중간 표시부 사이를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하고 상기 측정된 통과시간을 근거로 하여 상기 시료액의 점도를 계산하는 수단; 상기 제어 벨브시스템에 의하여 제어되며 상기 시료액을 상기 각각이 점도계 튜브로부터 배출시키는 수단을 포함하는 점도의 자동 측정장치.

발명의 효과 : 상기와 같은 구성을 함으로써 목적하는 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의장

5.1. 정의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의장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의장은 형상을 갖는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형체를 갖는 물품이어야 하므로 부동산, 분상물 등과 같이 일정한 형태를 갖지 아니하는 것은 그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형체를 갖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성물의 구성 각편, 물품 그 자체의 형체가 아닌 물품, 독립하여 거래될 수 없는 물품 등도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장은 그 형상·모양·색채에 의해 표현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갖추어야 하고, 의장에 나타나는 선, 색구분 등에 의해 표현된 것이어야 하며, 시각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 미적 처리가 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미적 처리”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으므로 그 물품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 말하는 의장은 공업적으로 반복하여 생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우연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물품의 디자인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그러한 예로서 삼사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내용에 관한 출원은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의장

- * 자연물을 의장의 구성주체로 사용하여 다양 생산 할 수 없는 것.
- * 순수 미술분야에 속하는 저작물

5. 2. 의장등록의 요건

의장등록의 요건은 의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출원이 있기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미 알려져 있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인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및 상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알려진 의장과 유사하거나, 또는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라도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정도의 의장인 경우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장법 제6조에서는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표장, 기장, 기타 공공 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이거나,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장이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의장”의 경우에 대하여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5. 3. 의장등록출원

상기의 정의에 해당하고, 의장등록요건 등을 만족하

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의장등록 출원시에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물품에 관한 사시도 및 도면(6면도)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도면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빛의 작용에 의한 그림자의 형성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진이어야 한다.

의장등록 출원서에 첨부되어 제출되는 도면은 사시도 및 6면도 이외에도 그에 따른 부속도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필요한 부속도면 등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에 유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지 못한 의장

- * 사용목적, 방법, 상태 등이 불분명한 것.
- *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
- * 물품에 관한 형상 및 모양이 설명하지 않은 것.
- * 의장이 추상적으로 설명된 것.
- * 재질, 크기 등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설명이 없는 것.
- * 색채를 주체로 하는 경우 착색되지 아니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 * 도면 중에 음영, 지시선 등 의장을 구성하지 아니한 선, 기호 등이 있는 것.
- * 입체물품의 경우 정투상도법에 의한 도면이 아닌 것.
- * 입체물품의 경우 도면의 축척이 상이한 것.
- * 6면도가 도시되지 아니한 것.
- *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 * 평면적 물품의 경우 도면의 축척이 상이한 것.
- * 입체물품의 경우 그 형상이 연속됨에 따른 연속상태를 알 수 없는 것.

5. 4. 의장권의 침해

의장법에서는 의장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 제62조),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63조), 손해액의 배상을 위한 배상액의 추정(법 제64조), 과실의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과실의 추정(법 제65조) 및 의장권자의

신용 등이 실추된 경우 그 신용회복을 위한 의장권자 의 신용회복(법 제66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벌칙규정 및 납용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침해죄(법 제82조), 위증죄(법 제83조), 허위표시의 죄(법 제84조) 및 사위행위의 죄(법 제8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상 표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중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들과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등과 그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표의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력,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 광고 선전의 기능 및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자에 이르러 상표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에서는 상표가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업가들은 타인의 상표(유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자신의 생산업품 등이 유명상품인 것처럼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조상표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모방상표를 금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품에 걸맞는 상표 및 자신의 영업에 걸맞는 영업표 등을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자신의 영업 등을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영위할 수 있게 된다.

6.1. 상표등록의 요건

상표법 제6조에는 상표의 등록요건으로서 등록될 수 없는 상표를 열거하고 있다.

- ①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
- ②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 ③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

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 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⑤ 혼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⑥ 간단하고 혼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⑦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다만, 상기 ③, ⑤, ⑥에서 규정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더라도, 상표등록 출원 전에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표의 것인가 하는 것이 현저하게 인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기의 등록될 수 없는 상표 이외에도 상표법 제7조에는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국장·산업재산권을 위한 파리조약 동맹국의 국기·훈장·포장·기장·적십자·올림픽 또는 현저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산업재산권을 위한 파리조약 동맹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중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②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현저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의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현저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다만,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 또는 공익사업체에서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⑤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 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저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락을 얻은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⑦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⑨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란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6.2. 상표의 출원

자신이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부착하려고 하는 상표를 개발한 자는 그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은 후, 심사관의 허락에 의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출원서에는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의 견본을 정해진 규격 범위내로 제작, 첨부하여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별로 출원을 하여야 한다.

6.3. 상표권의 침해

상표법에서는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법 제65조), 침해로 보는 행위(법 제66조), 손해액의 배상을 위한 배상액의 추정(법 제67조), 과실의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고의의 추정(법 제68조) 및 상표권자의 신용 등이 실추된 경우 그 신용회복을 위한 상표권자의 신용회복(법 제69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규정 및 남용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침해죄(법 제93조), 위증죄(법 제94조), 허위표시의 죄(법 제95조) 및 사위행위의 죄(법 제9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7. 결론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산업체산권제도는 현재 우리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외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나라가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산업계에서는 그 사업전략의 1순위로 놓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특허공보 등을 통하여 발표된 기술내용을 참고하여 우리의 산업체가 지켜 나가야 할 기술분야를 개척하여 제공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력이 약한 학계는 산업체의 도움을 받아 연구활동에 주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우리 산업체에 되돌려 주어 우리 산업체가 외국의 산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체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이를 산업체로 이관하면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다시 연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